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20. 10. 30.(금) / 총 3매(본문2, 참고1)
담당 부서	건설안전과	담당자	·과장 한명희, 사무관 문선일, 주무관 백현화 ·☎ (044) 201-3573, 3579, 3580
보 도 일 시		2020년 11월 2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1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2일부터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전국 건설현장 합동점검

- 전국 966개 도로·철도·건축물 현장에 11개 기관 합동점검반 투입·점검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동절기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1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30일간 “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점검은 도로, 철도, 수자원, 공항,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에 대하여 일제히 실시하며, 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20명을 포함한 11개 합동점검반으로 구성하였다.

* 도로 198, 수자원 20, 철도/지하철 247, 아파트/건축물 347, 공항 16, 기타 138개소

○ 합동점검반은 동절기 화재 위험공사 관리실태, 한중 콘크리트* 시공계획 등 품질관리 실태, 절개지·굴착공사 가시설 안전관리 실태, 타워크레인, 향타기 등 건설기계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한다.

*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

- 화재 위험공사에 대해서는, 화재취약 공중 및 밀폐공간 질식 등 겨울철 위험공사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,

- 혹한기에 사용하는 한중 콘크리트 타설·양생 시 적정한 시공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.

- **안전관리 실태**는 지반침하,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현황, 절개지 및 굴착공사 동바리, 비계 등 가시설 설치 적정성을 확인하고,
 - 타워크레인, 향타기 등 작동상태, 균열,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, 유효기간 경과 유무, 구조변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.
 - 또한,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보고서 작성, 근태·교체 적정여부,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도 함께 점검 할 계획이다.
- 점검 결과,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, 영업정지, 벌점·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가 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은 "이번 점검으로 정부의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, 건설현장의 '최우선 가치는 안전'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□ **목 적**

- 동절기를 대비해 **취약공종**(가시설, 지하굴착공사 등)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하여 **견실시공 유도**하고, **건설사업관리를 수행**하는 **건설기술용역업자 업무수행**에 관한 사항을 지도·감독

□ **점검반 구성** (총괄 기술안전정책관, 총 11개반 1,054명)

- (본부) 기술안전정책관(총괄), 건설안전과장(반장) 등 4명
- (지방청) 5개반 69명 (반장 : 건설안전과장)
 - * 서울청 16, 원주청 10, 대전청 11, 익산청 16, 부산청 16, 외부전문가 8
- (산하기관) 5개반 981명 (반장 : 실·처장 등)
 - * LH 494, 한국공항 11, 인천공항 4, 도로공사 30, 철도공단 430, 외부전문가 12

□ **기간 및 대상**

- (기간) '20. 11. 2. ~ 12. 11.(30일간, 공휴일제외)
- (대상) 966 개 현장(국토부 250 개, 산하기관* 716 개)

기관별	계	도로	수자원	철도/지하철	아파트/건축물	공항	기타
계	966	198	20	247	347	16	138
국토부	250	57	20	12	133	0	28
산하기관	716	141	0	235	214	16	110

* 본부(합동) 서울청 63, 원주청 25, 대전청 54, 익산청 48, 부산청 60

** LH 367, 한국공항 8, 인천공항 8, 도로공사 98 개, 철도공단 235

□ **향후계획**

- 부실시공 등 위법사항 확인 시 **벌점 부과, 공사중지 등 엄중 처분**